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2019. 11.

계명대학교 교무처

1. 학칙 개정(안)

가. 개정사유

1)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교육목적 상세 명기 및 인재상 관련 근거조항 신설
2) 직원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된 문구 정비
3) 내부감사 지적에 따른 전공융합트랙제도 폐지
4) 2020학년도 교육편제 변경에 따른 학위명 개정
5) 연계, 융합전공 구분 통합 및 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학위명 개정

나. 주요내용

1)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교육목적 상세 명기, 인재상 관련 근거조항 신설교-제2조(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목표)
2) 직원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된 문구 정비-제69조(구성 및 운영)제2항
3) 전공융합트랙제도 폐지-제30조1(이수학점)
4) 공학인증제 포기에 따른 학위명 삭제, 연계·융합전공 구분 통합과 융합전공 신설 및 교육편제 변경에 따른 개정-[별표2]

다. 학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2조(교육목적 및 목표) 우리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의 전인성 고취와 전문성 확립, 학문의 탁월성 추구와 윤리성 앙양을 교육목적으로 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창의적 전문가, 정의를 구현하는 윤리적 지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지도자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에 입각한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이념: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 **2. 교육목적: 학문의 탁월성 추구, 교육의 윤리성 앙양, 실존의 본질성 연찬을 통해 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 **3. 교육목표: 진리를 탐구하는 창의적 전문가 양성, 정의를 구현하는 윤리적 지성인 육성,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지도자 배출**	조명 변경 항번호 추가 교육이념 및 목표, 목적 상세 명기
<신설>	**② 우리 대학교의 인재상, 인재특성 및 핵심역량은 따로 정한다.**	인재상 관련 근거조항 신설
제30조의1(이수학점) ① (생략) ②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전공융합트랙의 최소 전공 이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의1(이수학점)**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최소 전공 이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연계/융합전공 통합 및 전공융합트랙

현 행	개 정(안)	비고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폐지
제45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①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생략)	**제45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①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현행과 같음)	공학교육인증제 포기 및 융합전공 신설 등에 따른 개정
제69조(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직원회의의 의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매 학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69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원회의의 의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문구 정비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학사학위 종류

현 행				개 정(안)				비고
대학	학부, 학과	전공	학위의 종류	대학	학부, 학과	전공	학위의 종류	
인문국제학대학	한국어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한국문화정보학전공	문학사 문학사	인문국제학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전공**	문학사 문학사	2020학년도 편제조정에 따른 수정 및 신설전공 학위명 추가
(생략)				(생략)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건축학전공(5년) 건축공학전공	공학사 건축학사 공학사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건축학전공(5년) 건축공학전공	공학사 건축학사 공학사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전기에너지공학전공	공학사 공학사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전기에너지공학전공	공학사 공학사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게임모바일공학전공 디지펜게임공학전공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게임모바일공학전공 디지펜게임공학전공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도시학부	교통공학전공 도시계획학전공 생태조경학전공	공학사 도시계획학사 조경학사		도시학부	교통공학전공 도시계획학전공 생태조경학전공	공학사 도시계획학사 조경학사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전공 <신설> 메카트로닉스전공	공학사 공학사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공학사 공학사		**화공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공학사 공학사	공학인증제 포기에 따른 인증제 관련 학위 삭제
	경영공학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전통건축학과		공학사 디자인학사 공학사		**산업공학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전통건축학과		공학사 디자인학사 공학사	
공과대학 (심화프로그램)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사 건축공학사		**<삭제>**			폐과에 따른 삭제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사					
	도시학부	교통공학전공	교통공학사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사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경영공학과		화학공학사 신소재공학사 경영공학사					
(생략)				(생략)				
음악공연 예술대학	오르간과		음악학사	음악공연 예술대학	**<삭제>**			
(생략)				(생략)				

현 행			개 정(안)			비고
대학	학과(전공)	학위의 종류	대학	학과(전공)	학위의 종류	
연계전공	유아체육전공	유아체육학사	융합전공	유아체육전공	유아체육학사	연계/융합 전공 구분 융합으로 통합
	의료경영전공	의료경영학사		의료경영전공	의료경영학사	
	섬유패션국제비지니스전공	섬유패션국제비지니스학사		섬유패션국제비지니스전공	섬유패션국제비지니스학사	
	스마트기계시스템공학전공	스마트기계시스템공학사		스마트기계시스템공학전공	스마트기계시스템공학사	
	문화콘텐츠전공	디지털아트학사		문화콘텐츠전공	디지털아트학사	
	스마트모바일공학전공	스마트모바일공학사		스마트모바일공학전공	스마트모바일공학사	
	웰빙바이오전공	웰빙바이오학사		웰빙바이오전공	웰빙바이오학사	
	지식서비스창업전공	지식서비스창업학사		지식서비스창업전공	지식서비스창업학사	
	미디어콘텐츠전공	예술학사		미디어콘텐츠전공	예술학사	융합전공 신설
	국경학전공	국경학사		국경학전공	국경학사	
	신흥시장지역학전공	신흥시장지역학사		신흥시장지역학전공	신흥시장지역학사	
	한국학전공	한국학사		한국학전공	한국학사	
	실감소프트웨어공학전공	공학사		실감소프트웨어공학전공	공학사	
	비즈니스데이터분석전공	비즈니스데이터분석학사		비즈니스데이터분석전공	비즈니스데이터분석학사	
	자율주행전기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공학사		자율주행전기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공학사	
융합전공	경영사회학전공	경영사회학사		경영사회학전공	경영사회학사	
	인문IT공학전공	인문IT공학사		인문IT공학전공	인문IT공학사	
	인문기업컨설팅학전공	인문기업컨설팅학사		인문기업컨설팅학전공	인문기업컨설팅학사	
	인문e-culture학전공	인문e-culture학사		인문e-culture학전공	인문e-culture학사	
	인문MICE학전공	인문MICE학사		인문MICE학전공	인문MICE학사	
	인문의료관광학전공	인문의료관광학사		인문의료관광학전공	인문의료관광학사	
	인문기계자동차공학전공	인문기계자동차공학사		인문기계자동차공학전공	인문기계자동차공학사	
	미래자동차실무공학전공	공학사		미래자동차실무공학전공	공학사	
				크리에이티브디지털콘텐츠전공	**크리에이티브디지털콘텐츠학사**	
				스마트경제통상전공	**경제통상학사**	
				아세안융합경영학전공	**경영학사**	

2.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가. 개정사유

1) 우리 대학교 인재상, 특성 및 핵심역량 명기
2) 조건부 재입학 학과(전공) 및 교육실습 관련 문구 정비
3) 내부감사지적에 따른 전공융합트랙제도 폐지
4) 타대학교 이수과목 및 학교현장실습과목의 등급 분포 비율 예외 기준 적용
5) 공과대학 공학인증제 포기에 따른 전공기초과목 이수 기준 적용

나. 주요내용

1) 인재상, 특성 및 핵심역량 명기-신설 제1조의2(인재상, 특성 및 핵심역량)
2) 조건부 재입학 학과(전공) 관련 문구 정비-제15조(복학 및 재입학)제4항
3) 전공융합트랙제 폐지-제5장, 제17조(교과이수학점)제3항
4) 실습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변경-제30조(교육실습 신청)
5) 타대학교 이수과목 및 학교현장실습과목의 등급 분포 비율 예외 근거-제33조(성적의 등급와 평점 등)제3항
6) 공과대학 전공기초과목 이수 기준-제69조(졸업의 기준)제2항제2호

다.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안)</th><th>비고</th></tr>
<tr>
<td>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92조에 의거 학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신설></td>
<td>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의2(인재상, 인재특성 및 인재핵심역량) 우리 대학교의 인재상, 인재특성 및 인재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인재상</th><th>인재특성</th><th>인재핵심역량</th></tr>
<tr><td rowspan="8">빛을 전하는 FACE 인재
(FACE Keimuyung Students Opening the Light to the World)</td><td rowspan="2">도전적 개척정신
(Frontiership)</td><td>도전정신</td></tr>
<tr><td>자기주도</td></tr>
<tr><td rowspan="2">윤리적 봉사정신
(Altruism)</td><td>감성역량</td></tr>
<tr><td>윤리적 가치관</td></tr>
<tr><td rowspan="2">국제적 문화감각
(Culture)</td><td>외국어 구사능력</td></tr>
<tr><td>문화적 포용력</td></tr>
<tr><td rowspan="2">창의적 전문성
(Expertise)</td><td>종합적 전문지식</td></tr>
<tr><td>문제해결 능력</td></tr>
</table>
</td>
<td>인재상 관련 조 추가 신설</td>
</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안)</th><th>비고</th></tr>
<tr>
<td>

제15조(복학 및 재입학)
① ~ ③ (생략)
④ 재적하였던 학과(전공)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전공) 등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의예과, 의학과)과 사범대학, 약학대학(약학과, 제약학과)은 해당대학 모집단위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5장 부전공, 전공융합트랙

제16조(이수 및 포기신청) (생략)
제16조의2(이수인정) (생략)
제17조(교과이수학점) ① ~ ② (생략)
③ 전공융합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학과(전공)에서 전공융합트랙으로 지정한 전공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실습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4학년 제1학기에 교육실습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성적의 등급과 평점 등) ① ~ ② (생략)
③ 학업성적의 등급별 분포 비율은 다음 기준에 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교직, 계약학과 개설 교과목,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교과목과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교과목은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A등급(A^+와 A^0)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등급	권장적정 비율		최대허용 비율		최대허용 누적비율	
	교 양	전 공	교 양	전 공	교양	전공
A^+ A^0	10 ~ 30%	10 ~ 30%	30%	30%	30%	30%
B^+ B^0	20 ~ 40%	20 ~ 50%	40%	50%	60%	65%
C^+ C^0	20 ~ 40%	20 ~ 40%	100%	100%	100%	100%
D^+ D^0	10 ~ 30%	10 ~ 30%	100%	100%	100%	100%
F	0 ~ 20%	0 ~ 20%	100%	100%	100%	100%

</td>
<td>

제15조(복학 및 재입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적하였던 학과(전공)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전공) 등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의예과, 의학과)과 사범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은** 해당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5장 부전공

제16조(이수 및 포기신청)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이수인정) (현행과 같음)
제17조(교과이수학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30조(학교현장실습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4학년 제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성적의 등급과 평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학업성적의 등급별 분포 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권장적정 비율		최대허용 비율		최대허용 누적비율	
	교 양	전 공	교 양	전 공	교양	전공
A^+ A^0	10 ~ 30%	10 ~ 30%	30%	30%	30%	30%
B^+ B^0	20 ~ 40%	20 ~ 50%	40%	50%	60%	65%
C^+ C^0	20 ~ 40%	20 ~ 40%	100%	100%	100%	100%
D^+ D^0	10 ~ 30%	10 ~ 30%	100%	100%	100%	100%
F	0 ~ 20%	0 ~ 20%	100%	100%	100%	10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학업성적의 등급별 분포 비율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실험·실습, 실기, 교직, 계약학과 개설 교과목,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교과목과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교과목. 단, A등급(A^+와 A^0)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td>
<td>

문구 정비 및 조건부 재입학 학과에 간호학과 추가

전공융합트랙 폐지에 따른 문구 정비

조명 변경 및 문구 정비

성적 등급 분포비율 예외 근거 마련을 위해 제3항을 제3항과
</td>
</tr>
</table>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2. 타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학교현장실습과목과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과목**	제4항으로 분리 및 문구조정
④ ~ ⑦ (생략)	⑤ ~ ⑧ (제4항 추가에 따른 항번호 이동: 내용은 현행과 같음)	
제69조(졸업의 기준) ①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교육과정 총 취득학점은 130학점 이상(의학과 160학점, 건축학전공, 약학과, 제약학과 165학점 이상) 이어야 하며 이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과목의 이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다. (생략) 2. 전공기초과목 이수: 대학이나 대학 내 그룹별로 지정된 전공기초과목(0~12학점) 이수. 다만 전공기초과목의 이수학점은 제1전공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3. 전공과목 이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라. (생략) ③ KAC, 음악공연예술대학부설 계명·쇼팽음악원,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학위과정, 계약학과(전공), 공학교육인증제, 간호교육인증제, 계명인문역량강화사업 등의 교육과정과 졸업사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졸업의 기준)** ①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정 총 취득학점은 130학점 이상(의학과 160학점, 건축학전공, 약학과, 제약학과 165학점 이상) 이어야 하며 이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과목의 이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전공기초과목 이수: 대학이나 대학 내 그룹별로 지정된 전공기초과목 **(0~12학점, 공과대학은 0~18학점)** 이수. 다만 전공기초과목의 이수학점은 제1전공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3. 전공과목 이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③ KAC, 음악공연예술대학부설 계명·쇼팽음악원,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학위과정, 계약학과(전공), **간호교육인증제**, 계명인문역량강화사업 등의 교육과정과 졸업사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공과대학 전공기초 지정에 따른 개정 공학교육인증제 삭제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